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91
----------	-------

제출년월일 : 2009. 10. .
제출자 : 동 두 천 시 장

1. 제안이유

○ 2009. 7. 1. (대통령령제2158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두천시 보육조례 중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육시설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안 제4조)
- 나. 보육정책위원회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제도 신설(안 제7조의 2)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를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전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사회복지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사회복지과장 문 영 철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여성보육담당 최 복 순
	담 당 자 성명 · 전화	최 성 애 860-2264